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[별지 제48호서식] <개정 2021. 9. 17.>

품질검사 의뢰서

시험·검사종목		(*)	
시료명			
시료량		(채취일 : . .)	
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			
시료 채취 장소			
시료 채취자	소속	담당 업무	성명 (서명 또는 인)
참관자	소속	담당 업무	성명 (서명 또는 인)
시험 및 시방기준			
성과 이용 목적			
공사 개요	공사명		
	착공일		
	준공예정일		
발주자			
시공자			
국가중요시설 여부			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·검사를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

주소

비고

1.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"국가중요시설(시설명)"로 적습니다.
2.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, 국회의사당, 대법원, 국가정보원, 중앙행정기관의 청사, 원자력발전소, 발전용량 100만㎾ 이상 발전소,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·TV방송국,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㎾ 이상의 송신시설, 군사시설,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의뢰서 작성 → 접수 → 시험·검사 실시 → 성과서 작성, 결재 → 발급

자 르 는 선

접 수 증

1. 접수일:
2. 의뢰 시험·검사 종목:
3. 시료명 및 시료량:

귀하께서 의뢰한 시험·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( )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접수자: ○ ○ ○ 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